

## [참고] 시장조성자 제도

항 목	시장조성자제도
<b>1. 시장조성대상</b>	<p>가. 적용상품(규정 §8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규상장상품</li> <li>- 유동성관리상품(매월 최종거래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약정수량 미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가지수선물 · 옵션(300계약), 주식선물 · 옵션(200계약),</li> <li>· 금리선물 · 옵션(200계약), 통화선물 · 옵션(100계약),</li> <li>· 일반상품선물 · 옵션(50계약)</li> </ul> </li> </ul> <p>나. 상품별 적용종목(세칙 §8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물거래 : 최근월 종목. 단,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한 4거래일부터는 차근월종목</li> <li>- 옵션거래 : 결제월종목 중에서 시장조성자가 계약기간의 개시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종목 수 이상으로 하여 시장조성종목으로 신고한 종목. 단, 주식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주권의 배당락등으로 주식옵션 거래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, 조정된 행사가격종목을 제외함. 월 1회이내에서 시장조성종목을 변경할 수 있음</li> </ul> <p>다. 시장조성상품현황( '09. 12월 현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년국채선물, 주식선물, 돈육선물</li> </ul>
<b>2. 시장조성자요건</b>	<p>가. 시장조성자의 요건(규정 §83②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투자매매업자 시장조성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자이므로 투자매매업무의 인가를 받아야 함</li> <li>2) 결제회원 시장조성자는 시장내에서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자이므로 회원으로 한정하되, 시장조성에는 위험이 수반되고, 또한 원활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이 높은 결제회원으로 한정</li> <li>3)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(세칙 §80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장조성자는 접속매매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매도 · 매수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담당할 직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</li> <li>· 시장조성자는 상품별 담당 직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사전 통지</li> </ul> </li> </ol> <p>※ 시장조성담당자의 자격은 회원사의 임직원일 것을 요구하므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, 기존 선물 · 옵션 담당자가 시장조성업무 중복 수행 가능</p>



항 목	시장조성자제도
	<p>나. 시장조성자의 자격상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자기매매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결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</li> <li>2) 거래정지, 영업정지, 담당 직원의 미지정 등 시장조성 역할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</li> <li>3) 시장조성자의 수가 제한된 상품의 경우 시장조성업무의 불이행, 태만 등 시장조성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</li> </ol> <p>다. 시장조성자의 수는 상품별로 최소 1개사 이상(세칙 §82②)</p> <p>-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복수의 시장조성자가 가능하나,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</p>
<p><b>3. 시장조성호가</b></p>	<p>가. 지정가호가로 한정(규정 §86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최우선호가간격을 축소시키는 고가매도와 저가매수의 쌍방 호가는 일반호가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고, 손실 및 재고위험이 적으므로 허용</li> <li>2) 일방호가의 경우 시장조성자별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 판단이 상이하고, 쌍방호가로 발생한 재고포지션 해소의 편리성을 위해 허용</li> </ol> <p>※ 시장가호가는 우선호가의 개념이 없어 최우선매도 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간 스프레드 축소는 시장 조성자제도의 취지상 허용하기 곤란</p> <p>나. 의무호가 스프레드 10 호가 간격(규정 §85①)</p> <p>-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간 간격은 10호가 간격 으로 함 (10개 초과시 호가제출 의무발생)</p> <p>※ 최우선매도 · 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일정 시간내에 스프레드 범위 이내의 쌍방 또는 일방의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,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하는 최우선매도 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간의 가격차이를 의무호가 스프레드라 함</p> <p>다. 최소의무호가 수량은 5계약(규정 §86①)</p> <p>- 시장조성호가 제출은 결제회원에만 허용되므로 일반 투자자의 호가 수량(1계약)의 5배이상으로 제출토록 함</p> <p>※ 최소의무호가수량을 너무 작게 할 경우 의무호가 제출빈도가 잦아 시장조성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호가단위의 5배인 5계약으로 함. 참고로 주식LP의 경우도 매매수량 단위의 5배임</p> <p>라. 의무호가제출시간 및 제출간격(규정 §85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시간에 제출</li> <li>2) 의무호가 제출간격 : 의무발생시부터 5분 이내</li> </ol> <p>· 주식시장의 의무호가 제출간격(5분)을 감안하여 의무 발생시점부터 5분 이내 호가를 제출하도록 함</p>

항 목	시장조성자제도
3. 시장조성호가	<p>마. 호가의 제출방법</p> <p>1)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지정가호가로 접속매매시간에 5계약 이상으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장조성호가는 별도로 개설된 시장조성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시장조성자에 대한 할인적용 거래증거금의 산출, 시장감시와 시장 조성 실적평가등에 활용</li> <li>· 단일호가 접수시간에는 우선호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접속매매시간에 한하여 제출토록 함</li> </ul> <p>2) 의무호가제출의 면제</p> <p>가) 당일의 약정가격 중 직전약정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접속거래시간(세칙 §86)</p> <p>나) 상한가에 매수호가만 있거나 하한가에 매도호가만 있는 경우 접속거래시간 (세칙 §86)</p> <p>※ 시장조성 상품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도달된 경우에는 일반 호가의 유입이 기대되고 시장조성자의 손실 축소를 위해 의무호가제출을 면제함</p> <p>다) 단일가격(시가 단일가 및 종가 단일가는 제외)의 결정 후 20분 동안의 접속거래시간(세칙 §86)</p> <p>라) 가격급변, 호가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접속거래시간</p> <p>마)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(세칙 §8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장조성자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· 시장조성자의 파업, 파산, 영업정지 등으로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· 시장상황의 급변,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 <p>3)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상품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및 가격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시장조성호가 이외의 호가제출 (세칙 §87)</p> <p>가)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수의 지정가 호가 또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이하의 매도의 지정가 호가</p> <p>나)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도의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 이하의 매수의 지정가 호가</p>



항 목	시장조성자제도
<p><b>4. 시장조성자 관리</b></p>	<p>가. 시장조성자 모니터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조성자의 자기거래가 불허, 결제회원 지위 상실, 회원탈퇴 등 외형요건 불충족 사유발생 여부를 상시적 모니터링</li> </ul> <p>나. 시장조성자 전용계좌 및 호가입력 구분(규정 §86②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시장조성 가능</li> <li>- 시장조성자의 호가는 일반의 자기매매호가와 구분하여 입력</li> </ul> <p>다. 시장조성자의 성과 평가(규정 §8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주기 : 시장조성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 주기인 분기기준</li> <li>- 평가내용 : 시장조성계약상의 의무호가 스프레드, 스프레드 축소여부, 거래량,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</li> <li>- 동 평가를 통해 시장조성대가 확정 및 지급</li> </ul>
<p><b>5. 시장조성자 혜택</b></p>	<p>가. 거래수수료 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06.12.18 시장조성자 거래수수료 면제(파생상품시장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품목)</li> <li>※ 거래수수료 면제로 시장조성자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, 호가스프레드를 축소시킴으로써 유동성 제고 효과를 가져와 유동성 조기 확보가 가능</li> </ul> <p>나. 시장조성대가 지급(세칙 §9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조성자에 대해 분기별로 호가, 거래량, 참여도를 종합평가하여 시장조성대가를 현금으로 지급</li> <li>※ 비시장조성자가 부담하지 않는 호가 제출의 용역·서비스를 시장조성자가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제공하고, 시장조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, 평가기간동안 시장조성상품에서 징수한 거래수수료의 80% 이내에서 대가를 지급</li> </ul> <p>다. 거래증거금 감경(세칙 §88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조성 계좌의 거래증거금은 비시장조성자 및 시장조성자의 일반 자기매매의 거래증거금의 80%</li> </ul> <p>라. 시장조성계좌내 미결제약정 수량 배제(규정 §15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회원별 미결제 약정수량 제한수량 산출시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미결제 약정수량은 원활한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입하지 아니함</li> </ul>

항 목	시장조성자제도
<p><b>6. 시장조성계약</b></p>	<p>1. 계약체결</p> <p>가. 계약당사자 및 계약대상의 적격여부(규정§83①, ②)</p> <p>나. 시장조성상품에 대한 계약기간 (세칙§82④)</p> <p>1) 원칙 : 분기단위</p> <p>2) 예외 : 분기의 두 번째, 세 번째 월에 상장되는 경우 분기 잔존 기간에 다음 분기를 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함</p> <p>다. 시장조성 계약서 작성 및 기명날인</p> <p>- 시장조성계약(세칙 별지제5호 서식)의 체결시한은 원활한 시장조성 추진 및 회원사 업무편의를 위하여 시장조성 개시일 7거래일 이전 계약 체결을 관례화</p> <p>※ 계약거부 통지시점(세칙 §82③), 계약연장 간주시점 (세칙 §82⑤), 시장조성계좌신고(세칙 §85)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7거래일전을 최종시한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함</p> <p>2. 계약의 연장 · 변경</p> <p>가. 계약의 연장(세칙 §82⑤)</p> <p>-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후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다음 분기까지 자동연장</p> <p>· 시장조성계약은 계약해지 요구, 계약체결 거부가 없는 경우에 한함</p> <p>- 계약해지 요구 및 체결거부는 계약기간 종료전 7거래일까지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</p> <p>· 통지의 효력은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문서 발송은 통상 계약 종료전 10거래일 이전에 문서를 발송해야 함</p> <p>나. 계약의 변경</p> <p>-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분기 종료 7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</p> <p>- 당해 변경은 분기 최종 거래일 거래종료 후부터 효력 발생</p>
<p><b>7. 시장조성자 평가 및 보수 지급</b></p>	<p>1. 시장조성대가 개요</p> <p>가. 시장조성대가의 기능</p> <p>- 시장조성자가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한 결과에 대해 대가를 산정 지급</p> <p>- ‘호가 평가’, ‘거래량 평가’, ‘참여도 평가’ 등 3개 항목을 평가</p>



항 목	시장조성자제도						
	<p>나. 시장조성자 평가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정한 수준의 최우선호가가격 유지 및 충분한 호가 공급을 통하여 투자자의 거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</li> <li>- 상품에 따라서는 거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양적 성장에 일조하는 것도 필요</li> <li>- 아울러, 시장여건에 관계없이 꾸준히 시장조성에 참여 할 것과 시장조성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</li> </ul> <p>다. 시장조성대가 산정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품별 투자지출 분포, 선호도 등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</li> </ul> <p>2. 평가 및 대가 지급순서 (개 요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시장조성자의 평가항목별 취득점수 산정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시장조성대가총액 산정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시장조성자의 평가항목별 지급률 산정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평가항목별 대가총액 산정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개별 시장조성자의 대가지급액 = Σ(평가항목별 지급률 × 평가항목별 대가총액))</p> </div> <p>가. 취득점수 산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가평가, 거래량평가, 참여도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징계간수를 감안하여 항목별 취득점수 산출</li> </ul> <p>나. 평가항목별 지급률 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조성자가 복수인 경우 점수 구간별로 지급률 별도 설정</li> <li>- 시장조성자가 복수인 경우 시장조성자 전체 취득점수 대비 개별 시장조성자의 취득점수 비중에 비례하여 지급률 산정</li> </ul> <p>다. 시장조성대가총액 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조성상품에서 징수한 거래수수료의 80%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</li> </ul> <p>라. 시장조성대가총액을 평가항목별로 분배하여 평가항목별 대가총액 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항목별 분배는 계약으로 정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적용하되, 상품 특성과 무관한 '참여도 평가'의 분배금액은 시장조성대가총액의 10% 수준으로 고정</li> </ul>	시장조성자의 평가항목별 취득점수 산정	시장조성대가총액 산정	↓	↓	시장조성자의 평가항목별 지급률 산정	평가항목별 대가총액 산정
시장조성자의 평가항목별 취득점수 산정	시장조성대가총액 산정						
↓	↓						
시장조성자의 평가항목별 지급률 산정	평가항목별 대가총액 산정						

항 목	시장조성자제도										
7. 시장조성자 평가 및 보수 지급	<p>마. 총 시장조성대가 산출</p> <p>※ 시장조성자의 대가지급액 =                      (호가평가 지급률 × 호가평가 대가총액) +                      (거래량평가 지급률 × 거래량 평가 대가총액) +                      (참여도평가 지급률 × 참여도 평가 대가총액)</p> <p>3. 보수지급</p> <p>가. 시장조성자가 단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- 취득점수에 따른 지급률에 따라 대가지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caption>&lt; 단수 시장조성자의 취득점수별 지급률 &gt;</caption> <thead> <tr> <th>점수</th> <th>40점 미만</th> <th>40-60점</th> <th>60-80점</th> <th>80-100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가총액의 × %</td> <td>50%</td> <td>60%</td> <td>80%</td> <td>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시장조성자가 복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- 항목별 취득점수를 시장조성자별로 계산 후 취득점수에 따라 항목별                      대가총액을 안분 비례하여 지급</p>	점수	40점 미만	40-60점	60-80점	80-100점	대가총액의 × %	50%	60%	80%	100%
점수	40점 미만	40-60점	60-80점	80-100점							
대가총액의 × %	50%	60%	80%	100%							

